

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120일
교통신기술의 명칭				
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	법 인 명		법인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 소	(우) (전화:)		
교통신기술의 범위				
교통신기술의 내용(요약)				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국토교통부장관 귀하				
구비서류	1. 교통신기술의 명칭·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1부			납부 심사비용
	2. 교통신기술의 내용(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신규성·진보성·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)을 기술한 서류 1부			1만원 (수입인지 첨부)
3.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1부				
4. 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1부				
5.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				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